

2025 전북 웰니스·의료관광 융복합 상품개발 및 운영지원 공모

(재)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는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) 대상 도내 의료기관 및 웰니스 관광지를 연계한 특화 서비스 제공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,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

2025 전북 웰니스·의료관광 융복합 상품개발 및 운영지원
공모를 시행합니다.

도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5. 9. 2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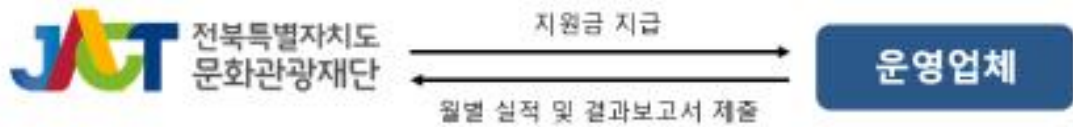
(재)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I

공모개요

- 공 모 명 : 2025 전북 웰니스·의료관광 융복합 상품개발 및 운영지원 공모
- 공모기간 : 2025. 9. 22.(월) ~ 10. 10.(금) / 19일간 * 사업 운영기간 : ~ '25. 12. 5.
- 공모대상 : 도내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(의료기관 및 유치업자)
 - * [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] 제6조제2항에 따름
 - * 공고일 기준 휴·폐업 중이거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(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 원 이상)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불가
- 지원예산 : 총 50,000,000원
- 선정규모 : 5개사 이내 * 1개사 당 10,000천원 내외 지원, 지원금은 상품내용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결정 됨
- 지원내용 :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) 대상 도내 의료기관 진료(건강검진 등) 및 웰니스 관광지 프로그램 운영 등 융복합 상품개발 및 홍보·운영비 지원
-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서식에 따른 이메일 접수(jy123@jbct.or.kr)

구분	내용
접수기간	◦ 2025. 9. 22.(월) ~ 10. 10.(금) 18:00까지 / 19일간
접수방법	◦ 제출서류 서식에 따른 이메일 접수 : jy123@jbct.or.kr - 제출 서류 양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- 참고사진 등 왜곡 방지를 위해 <u>지원신청서 및 발표자료 PDF 파일 제출</u> * 이메일 제목 : 2025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상품개발 공모 - 업체명 - <u>이메일 접수 후 유선전화 확인 필수(063-230-7472)</u> * 유선전화 미확인으로 접수누락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제출서류 (필수)	① 지원신청서 : 붙임1. 서식에 따라 작성 * 제출 시 파일명 : 지원신청서-업체명 - (첨부1) 사업계획서 - (첨부2) 사업자등록증 - (첨부3)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- (첨부4) 각종 실적증빙 서류(수상경력, 사업 수행경력 등) - (첨부5) 개인(기업)정보 제공 및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- (첨부6) 국지방세 완납 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* 첨부6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건만 인정 - (첨부7) 서약서 ② PT발표자료 : 15매 이내, 서식 자유 * 제출 시 파일명 : PT발표자료-업체명 - 발표자료 작성 시, 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상품/사업 개요 및 주요내용, 기대성과, 추진계획 등 내용 기재
유의사항	◦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불가 ◦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는 공고문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접수되지 않음 ◦ <u>제출서류 반드시 서명 등을 날인</u>하여 PDF파일로 제출해야하며,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◦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신청·선정 및 사업 수행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, 지원금 환수 및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

※ 운영업체 주요역할

-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특화 웰니스·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
- 전북자치도 웰니스·의료관광 상품 및 자원에 대한 개발 및 홍보
-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도내 의료기관과의 적극 협력
- 분기별 추진상황 및 현황보고 등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추진
-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, 가족 포함) 대상 상품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

□ 웰니스·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운영

- 운영대상 : 전북자치도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, 가족 포함)
- 운영기간 : 공모선정 완료 후 ~ 2025. 12. 5.(금)까지
- 운영내용 : 도내 **의료기관 진료(건강검진 등)** + 웰니스 **관광지** 프로그램을 결합한 융복합 상품개발 운영
 -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) 대상 융복합 상품 상시 판매 및 접수, 프로그램 운영
 - **최소 2개 이상 상품개발 * 1일 최소 1개 이상 웰니스 관광지 연계 필수**

예시		상품내용
치유·의료관광	체험형 의료관광	경증분야* 치료목적 환자 대상 다양한 관광코스를 결합한 체험형 의료관광상품 * 건강검진, 한방, 피부미용, 성형, 예방접종, 치과, 안과, 부인과 등
	체류연장 / 동반가족 관광체험 확대	중증분야* 체류연장(장기휴양치료, 재방문) 및 동반가족 관광체험 확대를 통한 관광 / 의료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의료관광상품 * 암, 생체이식, 정형외과, 재건성형, 당뇨병/합병증 등

* 첨부파일 <전북특별자치도 30개 웰니스 관광지 리스트> 참조

○ 기타운영사항

- 의료기관 진료 등 모든 의료행위비용에 대해서는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) 부담
-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)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
- 의료기관,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) 이용자 수, 국적, 수행 실적 등이 포함된 결과 보고 제출
- 재단이 요구하는 사항 및 협의에 따라 상품 프로그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① 전용차량 이용비 지원

- 지원내용 : 도내 외국인환자 유치인원수에 따라 전용차량 이용비 지원
- 지원기준 : 건 당, 최소 3인 이상 운영
 - (의료진료 전) 공항픽업 → 의료기관
 - (의료진료 후) 의료기관 → 전북 웰니스 관광지 프로그램 체험 → 공항
 - * 의료행위(진료, 입원 등) 체류기간에는 교통비 지원 불가, 외국인환자 자부담 집행
- 지원금액 : 1일 유치인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음

1일 전용차량 이용비 기준 * 상한금액	유치인원	3 ~ 5명	6 ~ 10명	11명 이상
	최대 지원금액(원)	500,000	800,000	1,100,000

* 단, 전용차량 이용비가 최대금액 이하일 경우 실비 지급

② 통역지원

- 지원내용 : 도내 외국인환자 체류기간동안(의료행위 기간 및 입·출국 포함) 통역지원
- 지원기준 :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) 10명 기준 통역사 1명 배치
- 지원금액 : 1일 기준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지원

구분 (1일 1인 기준)	지원내용		비 고
	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 유무	지원금액(원)	
1시간~5시간미만	미소지	50,000	- 통역사 1인당 1일 8시간 초과 시 15,000원 추가 지급 - 시군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교통비(실비) 별도 지급 - 숙박할 경우 숙박비용 실비 지급 * 상한액 70,000원 - 식사시간 포함 시 식비(8천원)별도 지급
	소지	60,000	
5시간~8시간이하	미소지	90,000	
	소지	100,000	
8시간 초과 시 (1일 상한 금액)	미소지	130,000	
	소지	140,000	

○ 통역비 신청 및 지급절차

- 일정 종료 후 상품운영 통역활동 확인서 및 통역비 증빙서류(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, 통장사본, 거래내역서(이체확인증 등)) 제출

○ 기타운영사항

- 차량 이동 시 통역사 필수로 탑승하여 공항 영접(피켓 서비스) 및 환송 실시
- 공항 내 환전, 휴대전화 로밍 및 예약 서비스 안내 등 편의제공
-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)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

③ 전북 웰니스 관광지 프로그램 운영지원

- 지원조건 : 1일 최소 1개 이상 웰니스 관광지 연계 필수
- 지원기준

구분	세부내용
숙박시설	◦ 도내 숙박이 가능한 웰니스 관광지 방문 시 지원가능 *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지 리스트 참조 * 웰니스 관광지 숙박시설 외 숙박비 지원 불가
웰니스 관광지	◦ 전북 웰니스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, 체험비 등 지원 * 전북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외 관광지 방문에 따른 비용은 상품 구매자(외국인환자) 부담
증빙자료	◦ 카드영수증, 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(인원수必) * 간이영수증, 간이세금계산서, 수기영수증 불인정 * 방문 관광지 마다 단체사진, 입장권, 방문일지, 숙박확인서, 결제 영수증 등 증빙필수 * 정산 검수 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※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시

- 전북 웰니스 관광지 체험 → 한옥마을 숙박 **▶ 체험비만 지원 가능**, 한옥마을 숙박비 지원 불가
- 한옥마을 투어 → 전북 웰니스 관광지 숙박 **▶ 숙박비만 지원 가능**, 한옥마을 투어 지원 불가
- 전북 웰니스 관광지 체험 → 전북 웰니스 관광지 숙박 **▶ 체험 및 숙박비 지원 가능**

④ 보험료 및 홍보비 지원

○ 보험료 지원조건

- 모든 프로그램 일정에 대한 보험 가입(여행자 보험, 이송 차량보험 등)
- 관광통역안내사* 사회보험 적용제도 시행에 따른 통역사 고용 / 산재보험 가입
 - ※ 관광통역안내사*는 노무제공자**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, 고용/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 및 시행 확정
 - ※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시행('22. 7. 1.) / 산재보험제도 시행('23. 7. 1.)

* **관광통역안내사**란 고용보험법시행령 ('24.1.1. 시행) 제104조의11제 1항 제15호 관련 15. 「관광진흥법」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

** **노무제공자**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,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,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

○ 홍보비 지원 * 기관(업체)당 5,000,000원 지원

- 개발상품의 판매 및 운영에 따른 모객활동, 홍보물 제작 등 홍보마케팅 운영
- 이용 차량에 전북자치도 웰니스·의료관광브랜드 및 재단 고로 부착, 차량 내 전북 웰니스·의료관광 홍보 자료 필수 비치 등 사업 홍보

VI

심사계획

- 심사방식 : 제출된 서류 적격검토 후 관련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사(사업계획서 및 PT발표) 평가

○ 심사절차 및 일정

(1차)행정심사 10. 13.(월)	▶	(2차)전문가 심사 10. 15.(수)	▶	결과발표 10. 17.(금)
필수제출서류 검토 및 결격사항 등 확인		사업계획서 및 PT발표 심사, 심사위원 토론을 통한 사업 운영업체 선정		재단 누리집 공고

* 2025. 10. 14.(화)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PT발표 심사일정 안내 예정

*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(1차)행정심사 기준

구분	세부내용	점수(점)
행정심사 결격사유	◦ 지원신청 자격 미충족자 및 부적격자 ◦ 필수 제출 서류(지정 양식 미사용 및 증빙자료) 미제출 ◦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◦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	심사배제

○ 전문가 심사(사업계획서 및 PT발표) 내용

- 사업 신청 접수순 사업계획서 및 PT발표 심사진행
- 프리젠테이션(PT)을 이용한 발표(10분) + 질의응답(10분) / 업체별 총 20분
- 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자 1인 필수참석

○ 최종 선정방법

- 심의위원별 심의점수 합산 후 평균값 순위에 따라 운영업체 최종 선정
- * 사업계획서 및 PT발표 심사 평균 점수 60점미만 탈락

○ (2차)전문가 심사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	합계	100+5
사업수행 전문성 및 수행역량 (50점)	◦ 최근 3년간('21~'24) 국외 전담운영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경력 - 연계 관광 상품 당해 실적 등	20
	◦ 최근 3년간('21~'24) 전북자치도내 외국인 관광객(또는 외국인환자) 유치실적 * 심사대상자 간 상대심사	10
	◦ 최근 3년간('21~'24) 전북자치도 지역상품 운영실적 - 전북자치도 지자체 및 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 참가 실적 등	15
	◦ 업체현황(직원 수, 유자격 가이드, 통역 현황 등)	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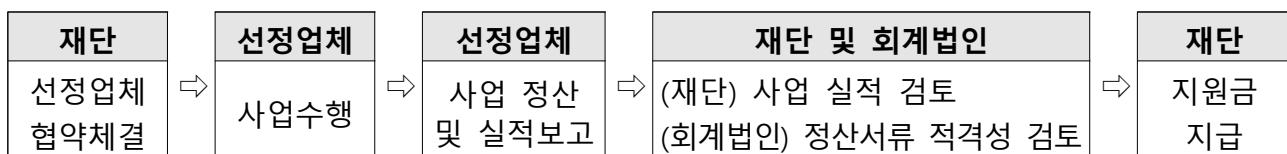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(40점)	◦ 전북자치도 특화 의료·웰니스 관광상품 운영계획 - 상품개발·운영 및 홍보마케팅 전략 -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등 운영계획 - 상품개발 노력 및 실현 가능성 등	30
	◦ 전북자치도 도내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) 유치계획 - 중점 유치 관광객 및 유치 목표인원	10
사업발전 기여도 (10점)	◦ 전북자치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	10
가산점	◦ 관광약자를 위한 리프트카 보유 업체	5

VII 사업선정 후 지원금 지급 안내

① 사전 협의 및 계획서 제출

- 제출기간 :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제출
- 제출방법 : 재단 사업 담당자 이메일(jy123@jbct.or.kr) 제출
- 기타사항 : 사업 선정 후 사업 운영 안내 및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위한 재단-선정업체 간담회 진행 예정('25. 10. 21.(화))

② 지원절차



③ 지급방식

- 상품운영 회차 또는 분기별 실적 집계 및 정산 접수 후 60일 이내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
-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으로, 2회에 나누어 지원금 신청 가능
* 중간 정산은 선택사항이며, 최종 정산 시 한 번에 신청도 가능
- 지원금 정산 제출서류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,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 제출 후 지급

④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

- 지원금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업 및 예산지출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함
-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, 기타 증빙서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선정 운영업체에게 있음

- 전문 회계법인의 사업 정산서류 검토과정에서 보완자료 요청 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
- 사업 승인 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 또는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단 협의 및 검토, 변경사항에 대한 재승인 필수

⑤ 정산증빙서류

구분	제출서류
상품구매 신청서류	◦ 구매자 명단 및 상품 구매신청서(프로그램 내용 등) ◦ 상품판매 내역서
공통제출 서류 (의료기관, 운영사)	◦ 사업자등록증, 관광사업등록증,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, 통장사본, 한국여행업협회(KATA) 회원증(해당사항) 각 1부 ◦ 개인정보 수집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1부
웰니스·의료관광 상품 프로그램 운영비	◦ 상품판매 및 운영 결과보고(홍보마케팅 운영 내용 포함) ◦ 상품운영 전용차량 이용비 * 차량임차 거래내역서 등 제출 ◦ 통역비 지급 내역 - 계약서(필수) 및 의료관광 통역 활동 확인서 - 계좌이체확인증(수령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확인) - 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(해당자에 한함) 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(필수) ◦ 숙박 및 프로그램 체험비 지출 증빙 자료 - 카드 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, 계좌이체 확인증 - 관광지 및 체험운영 단체사진, 입장권, 방문일지 - 숙박확인서 및 결제 영수증

* 정산 검수 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VIII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

- 공공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관단체의 초청(팸투어/박람회 등)에 따라 외국인환자(의료관광객)를 유치한 경우 또는 의료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 제외
-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(병원 등)이 공모 신청할 경우,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(업체)와 협업 가능
 - *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참고(www.medicalkorea.or.kr)
- 심사 결과 적격 업체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접수 미달의 경우 추가 모집(재공고) 예정

- 본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-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공모 참가와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
- 공모 참가 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며, 기재 사항이 빠지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기관(업체)선정 후 영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정처분,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, 실적 부진 등이 발생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본 사업 참여 및 지원 과정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, 부정한 행위를 한 기관(업체)은 추후 (재)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
-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공모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, 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
 -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 - 사업의 부실운영 또는 허위운영 할 경우
 -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,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 등
 (이와 관련한 민/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)

- 공모관련 문의 - 관광콘텐츠팀(063-230-7472)

IX

금후계획

- 사업공모 : '25. 9. 22. ~ 10. 10.
- 행정 및 전문가 심사 : '25. 10. 13. ~ 10. 15.
- 선정 결과발표 : '25. 10. 17.
- 사업추진 간담회 : '25. 10. 21.
- 선정기관(업체) 사업운영 : '25. 12. 5. 까지

- 붙임 1. (서식) 지원신청서 1부
 2. (참고)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지 리스트 1부. 끝.